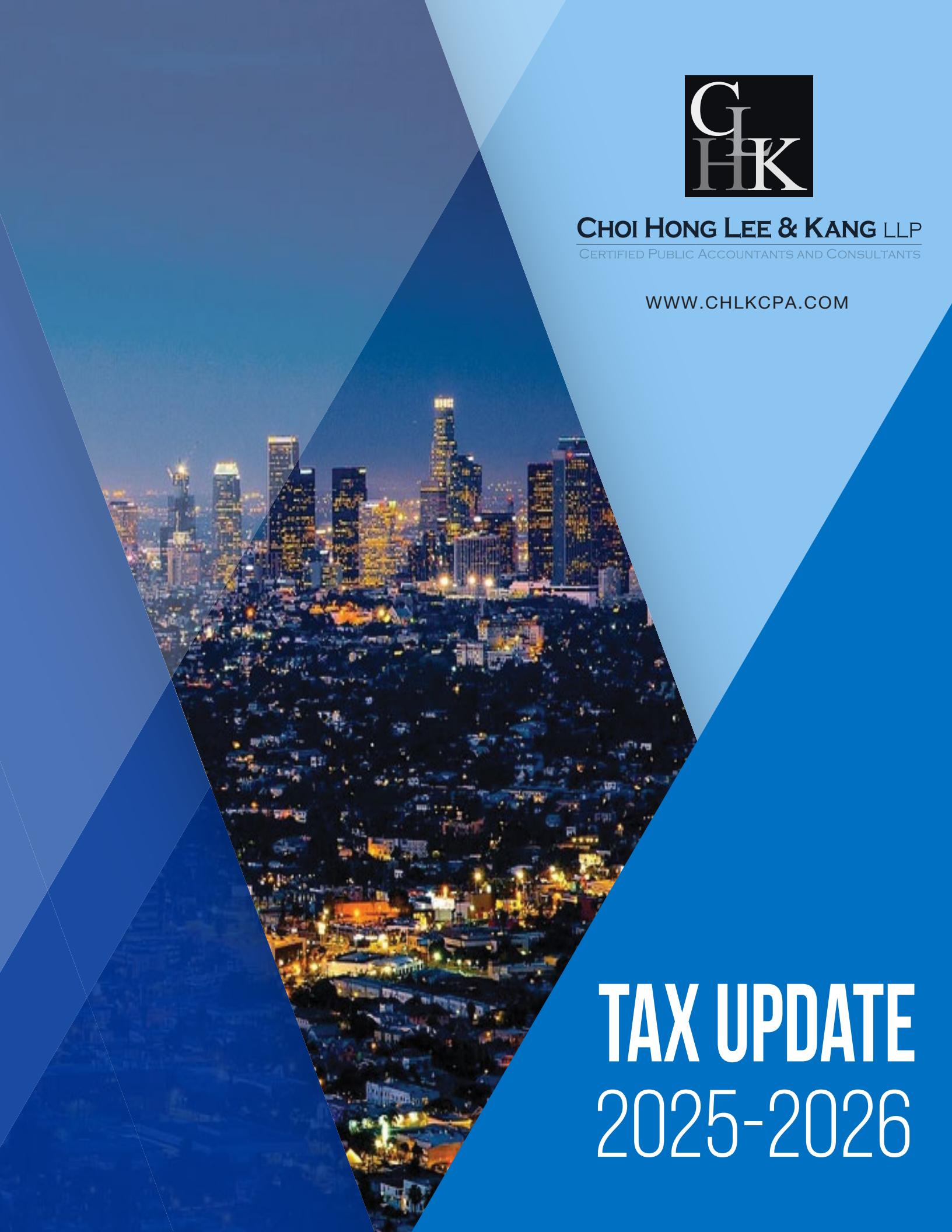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ONSULTANTS

[WWW.CHLKCPA.COM](http://WWW.CHLKCPA.COM)

A large, semi-transparent triangular graphic is positioned in the center of the page, pointing downwards. It contains a photograph of a city skyline at night, with numerous illuminated skyscrapers and buildings. The foreground of the photo shows a dark, hilly area with some scattered lights. The background is a dark blue gradient.

**TAX UPDATE**  
**2025-2026**

# 개인납세자

## ◆ 표준 공제 인상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년부터 적용되는 표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Single / Married Filing Separately: \$15,750
- Married Filing Jointly: \$31,500
- Head of Household: \$23,625

## ◆ 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 (OBBA)

- 65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000 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MAGI 가 \$75,000(부부 공동 신고 시 \$150,000)을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축소됩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정 조정 총소득)는 세금 혜택, 공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AGI를 다시 조정한 소득 기준입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한도 (OBBA)

2025년에는 \$13.99M이 적용되며, 2026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15M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 ◆ 기부금 공제 (현금 기부만 해당) (OBBA)

-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사용자: 2026년부터 영구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1,000 (부부 공동 신고 시 \$2,000)까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사용자: 2026년부터 AGI의 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로 인정됩니다.

## ◆ 해외 송금 소비세 (OBBA)

-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외국 수취인에게 보내는 송금에 대해 1%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 이 세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머니 오더, 캐쉬어스 체크)의 송금에 적용되며, 송금 서비스 제공자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암호화폐 송금은 제외되지만, 외화 송금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송금이 미국 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지거나, 미국 발급 직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1%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팁 소득 면세 (OBBBA)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5,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MAGI가 \$150,000 (부부 공동 신고 시 \$300,000)을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 초과 근무수당 면세 (OBBBA)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최대 \$12,500(부부공동 신고 시 \$25,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MAGI가 \$150,000(부부공동 신고 시 \$300,000)을 초과할 경우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 자동차 대출 이자 면세 (비지니스/상업용 제외) (OBBBA)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된 신규 대출의 이자 중 최대 \$10,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차량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조립된 승용차여야 합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 입양 세액 공제 (OBBBA)

최대 \$5,000까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 트럼프 계좌 (TRUMP ACCOUNTS) (OBBBA)

2025년부터 2028년 출생한 미국 아동을 위해 신설되는, 새로운 계좌로, 2026년 7월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타인은 수혜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연간 최대 \$5,00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18세가 되는 해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신생아 1인당 \$1,000의 초기 기금을 지원합니다.

## ◆ 주, 지방세 공제 한도 증가 (SALT CAP) (OBBBA)

- 2025년 개인 한도는 \$40,000이며 (2024년 \$10,000에서 증가), 이후 2029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할 예정입니다.
- \$50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30%만큼 공제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지만, 공제액이 \$10,000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 SECURE ACT 2.0

- **Traditional IRA:** 2025년 납입금 한도는 최대 \$7,000이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1,000 납입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추가 납입을 허용하지만 세금 공제는 \$1,000으로 제한되고, 70.5세 이상은 공제 불가합니다. Traditional IRA의 필수 최소 인출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시작하는 나이는 2023년부터 **73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2세였으나, SECURE Act 2.0에 의해 2023년부터 RMD 시작 연령이 73세로 조정되었습니다.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73세에 RMD를 시작해야 하며,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75세에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 **QLACs(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 QLAC는 최대 \$210,000(2026년 \$210,0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전통적 IRA, 403(b), 457(b)에서 구매 가능. 분배는 최소 85세부터 시작됩니다.
- **QCDs(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QCD를 통해 최대 \$108,000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2026년에는 \$111,000으로 조정됩니다. RMD는 73세부터 시작되지만, QCD는 70.5세부터 가능합니다. Secure 2.0에 따라 최대 \$54,000까지 기부 유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nherited IRAs:** 상속받은 IRA는 계좌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전액 분배해야 하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Roth IRA:** 2025년 Roth IRA 기여 한도는 최대 \$7,000이며, AGI에 따라 제한됩니다. 2026년부터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 403(b), 457(b)에 참여하는 고소득자(전 연도 연봉 \$150,000 이상)는 Roth 방식으로만 Catch-Up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New Nonelective SIMPLE Contribution Option:**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에게 최대 \$5,000까지 추가로 납입해 줄 수 있으며, 납입금 한도는 각 직원 연봉의 10% 또는 \$5,000 중 더 적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 **Emergency Savings Accounts:** 비고소득 직원에게 자동으로 설정되는 긴급저축계좌는 최대 \$2,500 까지 기여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 출금 시 벌금이 면제됩니다.
- **Matching Contributions for Student Loan Repayments:**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퇴직연금 기여로 매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갚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 1099-DA

- IRS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부터, 브로커는 2025년 1월 1일 이후의 디지털 자산 판매로 얻은 수익을 1099-DA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브로커는 총 수익을 보고하고, 2026년부터는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초 금액도 보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마감된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자가 지불하고 판매자가 받은 디지털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브로커 보고 규정은 Form 1099-S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Form 1099-S는 부동산 거래 보고를 위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 사업자

## ◆ BONUS DEPRECIATION (OBBBA)

기존 TCJA 법에 따라 2025년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40%로 떨어질 예정이었고, 2027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OBBBA 법안으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영구 부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및 사용 개시한 자산부터 영구적으로 100%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하고 중고 자산도 100% 공제 가능합니다. 20년 이하 감가상각 자산인 기계, 장비, 차량, 컴퓨터, 가구 등에 적용됨은 물론 39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생산용 건물 자산(Qualified Production Property)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생산용 건물 자산은 제조업, 농업, 화학 제조, 정제 등의 생산 활동을 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합니다. 적격 개선 자산(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은 섹션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적격 개선 자산이나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 ◆ SECTION 179 비용처리 (OBBBA)

- 즉시 비용 처리 한도는 \$2,500,000으로 상향되며, \$4,000,00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 한도는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 해당 규정은 2025년 이후 사용 개시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

## ◆ 1099 THRESHOLDS INCREASE

2024년에는 제3자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총 지급액이 \$5,000 을 넘으면 1099-K 가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총 금액이 \$20,000 을 초과하고 거래 건수가 200건 이상일 때 발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099-MISC 와 1099-NEC 는 \$600 이상일 때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2,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 C CORPORATIONS CHARITABLE CONTRIBUTIONS

OBBBA 법안으로 인해 2026년부터 C Corporation 의 기부금 공제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이 과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됐지만 새로운 1% Floor 가 도입되어 과세소득의 최소 1%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여 공제 가능 비용이 줄었습니다. 공제 가능 한도는 10%로 전과 동일합니다.

## ◆ 사업 이자 공제 (OBBBA)

2025년부터 section 163(j)에 따른 EBITDA 기준 30% 이자 비용 공제 한도가 다시 적용되어, 더 많은 이자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SECTION 199A 공제 (QBID) (OBBBA)

-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체에 대한 20% 공제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 2026년부터 SSTB에 대한 공제 단계적 축소 구간이 \$75,000 (부부 공동 신고시 \$150,000)으로 상향되며, QBI가 \$1,000 이상인 납세자는 최소 \$4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AX UPDATE & TAX PLANNING

##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는 모든 납세자의 총 의료 비용이 조정후 총 소득 (AGI)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5년 의료 마일리지 (medical mileage) 비율은 마일당 21¢입니다.

## INCOME EXCLUSION OF CANCELLATION OF DEBT ON PRINCIPAL RESIDENCE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주거주지의 모기지 융자 탕감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에서 면제 됩니다. (부부 공동 보고 시 \$750,000 까지, 부부 별도 보고 시 \$375,000 까지) 캘리포니아는 2013년 이후, 주 거주지 모기지 융자 탕감 소득 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은퇴 연금 플랜 (401(k), SEP IRA 등)에 저축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025년에 401(k)의 경우 최대 \$23,500 (50세 이상인 경우 \$31,000), SEP IRA의 경우 최대 \$7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납세자는 2025년도 세금공제를 위해 최대 \$7,000 (50세 이상은 \$8,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소득 (conversion income)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환하는 것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QLACs**(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는 **IRA**의 **RMD**(필수 최소 분배) 요구사항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최대 금액은 **2025년 \$210,000**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됩니다. **QLACs**는 정의된 기여 플랜, 전통적인 IRA, **§403(b)** 및 **§457(b)** 플랜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2024년부터, 퇴직연금 계좌 소유자는 73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72세). 1951년-1959년, 이 기간에 태어나신 분은 73세에 첫 RMD를 시작해야 하며, 196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75세에 첫 RMD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RMD를 연기한 납세자는 두 번째 해에 2번의 RMD를 수령해야 합니다. RMD를 수령해야 하는 자격이 되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은퇴 연금계좌 소유자가 59½세가 되기 전에 계좌에서 은퇴금 수령 (distribution)을 하게 되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 또는 적격 연금 플랜에서 수령한 은퇴 연금 금액은 수령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롤오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없이 롤오버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목적과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 10% 추가 세금에서 면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4년 예외 적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ILD TAX CREDIT (CTC)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영구적으로 \$2,200로 인상되며, 이 중 \$1,700은 환급 가능합니다. 자녀와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사람 모두 사회보장번호 (SSN)를 보유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의 사회보장번호만 요구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 소득 \$400,000 초과시 (그외 \$200,000)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자녀가 아닌 other dependent에게 제공되는 \$500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S

OBBBA의 항목별 자선 기부금에 대한 AGI 0.5% 기준점은 2026년에 발효됩니다.

-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2025년에 기부금을 집중하여 미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2026년부터 시작되는 현금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특별 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적격 자선 배분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QCDs)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계좌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AGI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기준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개인 납세자

##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25년 연간 증여세 공제액은 \$19,000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19,000 이상의 증여를 하는 납세자는 해당 증여를 증여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1인당 통합 증여 및 상속세 면제는 \$13,990,000입니다. 연간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하면 평생 공제액에 합산되므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2025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최대 \$130,000의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260,000까지 (2025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2025년 동안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시 해외계좌를 2026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15까지 연장가능) 외국 금융 계좌에는 다음 계좌들이 포함됩니다: 중개 계좌 (Brokerage Accounts), 뮤추얼 펀드 (Mutual Funds), 신탁 (Trusts) 또는 기타 유형의 외국 금융 계좌.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6,18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61,856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연말 기준 : 미국 거주시 - 부부 \$100,000/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 부부 \$400,000/Single \$200,000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 부부 \$150,000/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 부부 \$600,000/Single \$300,000

## PRINCIPAL RESIDENCE

## PENALTY ISSUE FOR NOT HAVING HEALTH INSURANCE CONTINUE IN 2025

## FIRST-TIME PENALTY ABATEMENT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 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면제 자격이 없는 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5년 벌금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1) 가족 성인 1인당 \$900 (부양 자녀당 \$450); 연간 최대 \$2,700 까지
- 2) 주 정부 총소득 신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소득의 2.5%

2022년 1월 1일부터 FTB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납세자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늦었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요청은 구두 (orally) 또는 서면 (in writing)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IRS)는 4년에 한번씩 벌금감면을 허락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벌금감면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의 벌금감면은 개인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제공되며 세금 보고서 미제출, 세금 미납, 늦은 세금 보고서 제출 또는 늦은 세금 납부에 한해 적용됩니다. 요청은 구두 또는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REINVESTED DIVIDENDS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CAPITAL GAIN (LONG-TERM)

Rate	Taxable Income Breakpoint (2025)			
	독신 (Single)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개별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외부모 (Head of Household)
0%	\$48,350	\$96,700	\$48,350	\$64,750
15%	\$533,400	\$600,050	\$300,000	\$566,700
20%	No Breakpoint			

\*\*조정후 총소득(AGI) 금액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WASH SALE RULES

납세자는 주식이나 증권을 손실로 매도한 후,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구매하거나, 완전히 과세되는 거래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해당 주식이나 증권에 대한 옵션이나 계약을 취득하거나, IRA나 Roth IRA에서 이를 취득한 경우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재조직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전 회사와 후속 회사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INVESTMENT INTEREST

투자 시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NSTALLMENT SALE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 CALIFORNIA MINIMUM WAGE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체 규모에 대해 시간당 \$16.50에서 \$16.90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A 시의 최저시급 \$17.87, LA시 미편입지구 (Unincorporated Area of LA) 의 최저시급 \$17.81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PASS-THROUGH ENTITY ELECTIVE TAX

캘리포니아에서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는 LLC, S Corporation, 파트너십들은 과세 연도 2021년 - 2025년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 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 2030년까지 연장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세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 (주주)의 연방 순이익 (Federal Net Income) 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파트너 (주주)가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 수탁자 (Fiduciary), 상속재산 (Estate), 신탁 (Trust), Single member LLC 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의 경우, 그 과세 연도 동안 6월 15일까지 첫 번째 납부금 (\$1,000 또는 이전 과세 연도에 납부한 선택 세금 (Elective Tax)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격 조건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있습니다. 나머지 납부금은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CALSAVERS PROGRAM

CalSavers는 고용주가 자체 은퇴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은퇴 연금 제도입니다. IRS는 캘리포니아 CalSavers 프로그램을 Roth IRA로 분류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직원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NOTICE 후 90일 경과시 \$250/직원, 180일 경과 시 추가 \$500/직원). 직원이 1명 이상인 고용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501(c)(3) 면제 대상인 종교 단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NET OPERATING LOSS (NOL)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NOL은 과세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세소득의 100%가 허용됩니다). 이월은 무기한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NOL은 최대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연방과 캘리포니아 모두 전기 이월(Carryback)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AUTOMOBILE EXPENSE

2025년 표준 마일리지 요금은 70¢ 입니다. 납세자는 입증을 위해 자세한 마일리지 일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MEAL & ENTERTAINMENT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Deduction이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식사 및 Travel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OBBBA 법안에 의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간식인 de minimis fringe benefit (미미한 경조사 혜택)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INCOME TAX AUDIT

## IRS EXAMS INCREASING

IRS의 2024-2025 전략 운영 계획에 따르면, 감사 비율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감사 비율이 세 배로 증가하고, 대형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10배로, 고소득 개인에 대해서는 50%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시 필요합니다.

##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구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구좌에서 개인 구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INCOME TAX AUDIT

##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FOREIGN GIFT

2025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20,116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납세자가 form 1099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form 1099를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ue Dates까지 IRS 에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 건당 \$60 ~ \$310 벌금이 부과됩니다.

### Form 1099 Due Dates

#### 1) Paper Form 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6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2/28/2026

#### 2) E-filing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6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3/31/2026

#### 3) Recipient Due Date:

1099-NEC의 경우 1/31/2026 ,  
1099-MISC, 1099-DIV, 1099-INT 및 1099-R의 경우 1/31/2026

# INCOME TAX AUDIT

##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s, 영수증, 송장 (Invoices) 및 기타 모든 문서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 Partners

Ilsup (Tommy) Lee	(213) 639-6285	ext.717	tlee@chlkcpa.com
Ik Su (Justin) Kang	(213) 639-6296	ext.716	jkang@chlkcpa.com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724	sykang@chlkcpa.com
Kyu J.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Henry Kim	(213) 382-8001	ext.780	hkim@chlkcpa.com

### Managers

Samantha Kang	(213) 550-2183	ext.712	samkang@chlkcpa.com
Changkwon Moon	(213) 550-2184	ext.720	ckmoon@chlkcpa.com

### Staffs

Emily Chung	(213) 382-8001	ext.781	echung@chlkcpa.com
Sunny Soh	(213) 365-1700	ext.719	ssoh@chlkcpa.com
Bokyung Shin	(213) 365-1700	ext.782	bshin@chlkcpa.com
Jihyun Lee	(213) 550-2090	ext.725	jlee@chlkcpa.com
Dukjun Seo	(213) 365-1700	ext.710	dseo@chlkcpa.com
Hansol Kang	(213) 365-1700	ext.710	hkang@chlkcpa.com

### Advisors

Jung G. Choi (Inactive)	(213) 365-1700	jgbsbc@gmail.com
Sung Ha Hong (Inactive)	(213) 365-1700	sunghahongcpa@hotmail.com
Spencer S. Moon (Inactive)	(213) 365-1700	spencermooncpa@gmail.com
Jay Chung	(213) 365-1700	jaynchung@gmail.com

## La Palma Office

1 CENTERPINE DR., SUITE 350, LA PALMA, CA 90623

T: (714) 676-8100 F: (714) 735-9029

### Partner

Soh Yun Kang Park	(213) 550-2182	ext.713	sykang@chlkcpa.com
Kyu Jeong Kim	(213) 550-1277	ext.727	kyukim@chlkcpa.com

### Manager

Amy Lee	(213) 639-6295	ext.719	amylee@chlkcpa.com
---------	----------------	---------	--------------------

### Staffs

Haley Jeehea Ahn	(213) 481-5486	ext.722	hjahn@chlkcpa.com
In Joo Moon	(213) 550-2185	ext.735	ijmoon@chlkcpa.com
Sharon Cha	(213) 427-9595	ext.728	scha@chlkcpa.com
Frederick Kim	(213) 385-2598	ext.734	fkim@chlkcpa.com
Ye Bin Kim	(714) 676 -2097	ext.733	yebin@chlkcpa.com
Lia (Kyoung Nam) Choi	(714) 676 -3131	ext.730	liachoi@chlkcpa.com
Stephanie Kim	(714) 676-3100		skim@chlkcpa.com

##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310) 542-6373 ext.751

jko@chlkcpa.com

### Staffs

Seungyeon (Elly) Lim

(310) 542-6373 ext.754

elim@chlkcpa.com

### Advisor

Hong Won Suh

(310) 542-6373

## La Mirada Office

14730 BEACH BLVD., SUITE 207, LA MIRADA, CA 90638

T: (714) 482-6369

### Partner

James M. Chung

(714) 482-6369 ext.705

jchung@chlkcpa.com

### Staffs

John Kim

(714) 482-6369

johnkim@chlkcpa.com